2026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경찰청 공고 제2026-57호('26.9.30.)로 공고한 2026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우수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근무 예정 부서가 충청북도경찰청(소속 경찰서 포함)인 직무 분야에 한함.

2026년 10월 16일

충청북도경찰청장

1 충북청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3개 분야, 총 6명)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연번	직렬(직류)	계급	직무분야	임기	연장	선발인원	근무 예정 부서
21	의료기술(의료기술)	7급	정신·신체건강 증진·지원	'29.08.30.	가능	1	충청북도경찰청
22	보건(보건)	8급	심리상담·검사	'29.08.30.	가능	1	충주서
29	운전(운전)	9급	차량관리 담당	'28.12.31.	가능	4	청주상당서, 보은서, 청주청원서, 옥천서

※ 하나의 분야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최초 채용공고(경찰청 공고 2026-57호)의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단, 기존 출원자는 중복지원 불가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함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사업의 임기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회의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처리지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균형인사 지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 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는 동 조항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12. 18.) 기준으로 판단]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 응시자격요건은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만 선택**하여 기재

 ※ 응시자격요건 미충족 시 우대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응시자격요건 충족 우선하여 선택 및 기재할 것

 ※ 학위 요건(학위 취득 후 일정 경력 요구 시 제외)의 경우 임용예정일(2027. 2. 15.) 기준으로 판단

[참고]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만 선택하여 응시**
예) 자격증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자격증,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착오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등 지원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2.18.)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027.2.15.)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인정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인정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격증' 요건의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기간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7.2.15.)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12.) 기준]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12.)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 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연구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건별 차등 우대, 최대 5편)

※ 최근 5년 이내('21.1.1 이후)에 SCI, SSCI, SCIE,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학위논문은 제외)

- [어학성적]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1건만 인정

- 복수의 학위 및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상위구분 1개만 인정(구분별 차등 우대)

※ (예외) 연번8(검시조사관)의 경우,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관련분야 자격증 중복우대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자격별 차등 우대)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 전자계산기(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구))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 소지자 (등급별 차등 우대)

등급	1급	2급	3급
가산점	3	2	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등급별로 차등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⑦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 의사상자 가점은 10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아래 의사상자는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1. 만점의 5% 가산 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만점의 3% 가산 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조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응시인원 (선발예정인원 대비)	**평가방법**	**서류전형 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 5배수	응시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적격자 모두 합격
5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서류전형기준 적극 심사	5배수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7배수
20배수 초과		10배수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 전문지식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재공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10.16.(금)	'26. 10. 16.(금) ~ 10. 26.(월)	'26. 11. 27.(금)	'26. 12. 4.(금) ~12. 18.(금)	'26. 12. 30.(수)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및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http://gosi.police.go.kr)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 접수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 원서접수 · 서류제출 기간: 2026. 10. 16.(금) ~ 10. 26.(월) 18:00 <11일간>

 ※ 접수 취소기간 : 10. 16.(금) ~ 10. 26.(월) 18:00

- 원서접수·서류제출 방법 : 붙임 별지서식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접수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접수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충청북도경찰청 8층 교육계**

 ※ 제출마감일(10. 26. 18시)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 **방문접수 희망시 별도 문의**(충북경찰청 교육계 043-240-2132)

- **응시원서는 1회(1개 지역,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거주지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내에는 응시 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용 수정 불가능

- 응시수수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15조)

 – 응시수수료 : 6·7급, 연구사, 전문경력관 7천원 / 8·9급 5천원

 – 수수료 납부 방법 : 서류제출 시 **정부수입인지* 첨부**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는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증명서류*를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응시표(부본, 응시번호 포함)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원서 접수시 이력서에 전자우편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고, 면접시험 당일 소지하여야 함

- 서류제출 시 **[별지서식 제11호]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 3" 참조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필 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자필 서명 필수)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발급)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등 사본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요건 및 "붙임 2" 임용예정직위별 직무기술서 참조	○ 별지서식 제7호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위논문요약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별지서식 제9호
	소송 수행실적 증빙서류 1부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운전경력증명서 1부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가산특전 증명서(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1부	
	장애인·저소득층 증명서 1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증명서류 1부	

※ 증빙서류 미제출하는 등 증빙하지 못한 경력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함

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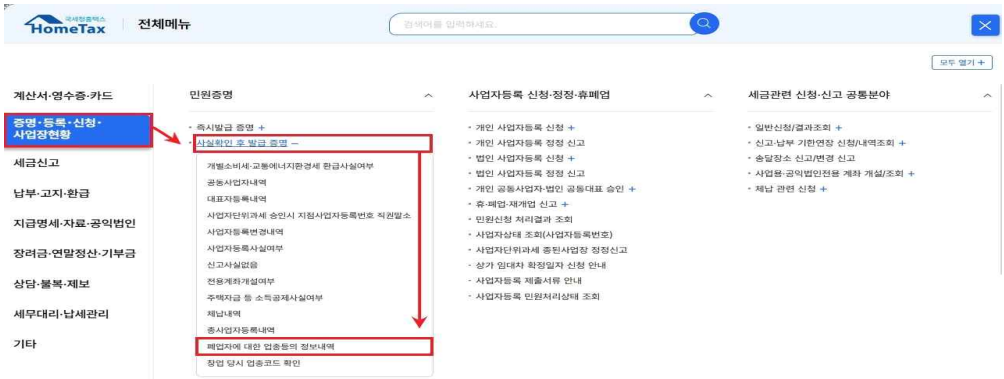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원서접수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귀속연도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소득금액증명서상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의 홈텍스(소득·연말정산)' 메뉴 이용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제출목록 순서대로 편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 일정기관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2. 30.(수) ~ '27. 1. 29.(금)

7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7. 2. 15.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구 분			채용 기간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연번 21~22번	의료기술(의료기술) 보건(보건)	임용일로부터 **2029. 8. 30.까지**
	연번 29번	운전(운전)	임용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사업의 임기 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회의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일반직공무원은(전문경력관 포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연구직 공무원은 동 규정 [별표 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해 초임 호봉을 결정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연봉한계액표**

구 분	2026년도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101,104	42,099
일반임기제 5호(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93,801	53,316
일반임기제 6호(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81,945	41,288
일반임기제 7호(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68,922	33,075
일반임기제 8호(8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58,820	26,945
일반임기제 9호(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48,557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공무원연금법」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8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그 밖에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 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충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계(043-240-213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 면접시험 사전질문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연번	직종	직군	직렬	직류	직위	계급	선발인원	직무분야
21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9.8.30.까지 근무)	과학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주사보	7급	18명 (장애인 1)	정신·신체건강 증진·지원

※구분모집 : (장애인)

임용예정직급	주요업무	근무예정부서 및 인원		
의료기술 7급	○ 경찰청 심리상담·검사 실무 운영·관리 ○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관련 협력병원 모집 및 연계 ○ 특수건강검진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건강지도관' 업무	각 시·도경찰청 경무		
		서울청 1	부산청 1	대구청 1
		인천청 1	광주청 1	대전청 1
		울산청 1	세종청 1	경기남부청 1
		경기북부청 1	강원청 1	충북청 1
		충남청 1	전북청 1	전남청 1
		경북청 1	경남청 1	제주청 1(1)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필요 지식	○ 스트레스·우울·불안·외상 등 심리적 위험요인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 ○ 질환 예방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 경찰 직업환경의 특수성 ○ 건강위험도 평가, 상담 및 개인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설계·운영에 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경 력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학 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소속원의 보건 및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 경력, ② 심리상담,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부검 등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심리학, 간호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작업치료학, 보건학, 의학(예방, 직업환경 등), 산업위생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우대요건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1개만 인정)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복수 소지 시 상위 자격 1개만 인정)

자격증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1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1급, 상담심리사(한국심리학회)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산업보건지도사
	나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2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상담심리사(한국심리학회) 2급, 임상심리사 1급, 간호사
	다	임상심리사 2급, 산업위생관리기사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연번	직종	직군	직렬	직류	직위	계급	선발인원	직무분야
22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9.8.30.까지 근무)	과학기술	보건	보건	보건서기	8급	20명 (장애인 1)	심리상담·검사

※구분모집 : (장애인)

임용예정직급	주요업무	근무예정부서		
보건 8급	○ 자살경찰관 원인분석 및 유가족·동료케어 ○ 관서별 상담실·심신안정실 구축 추진 ○ 소속 직원 의무 심리상담·검사 실시 ○ 경찰관 마음건강 종합검진 실시 ○ 관서별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지원	각 시·도경찰청 소속경찰서		
		부산청 1	대구청 1	인천청 1
		대전청 1	울산청 1	세종청 1
		경기북부 1	강원청 2	충북청 1
		충남청 1	전북청 1	전남청 2
		경북청 3(1)	경남청 2	제주청 1

※ 각 시도경찰청 통합선발 후 경찰서별 배치 예정, 배치현황은 다음페이지 참조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필요 지식	○ 심리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자살 시 사후 대응, 위기 개입에 대한 지식 ○ 자살예방사업 및 재난심리지원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2급 이상, 임상심리전문가
〔관련분야 경력〕 심리상담,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부검 등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심리학, 간호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작업치료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우대요건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상위학위 1개만 인정)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 상위 자격 1개만 인정)

자격증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1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1급, 상담심리사(한국심리학회)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나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2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상담심리사(한국심리학회) 2급, 임상심리사 1급
	다	임상심리사 2급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연번	직종	직군	직렬	직류	직위	계급	선발인원	직무분야
29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8년까지 근무)	과학기술	운전	운전	운전서기보	9급	35명 (장애인 2)	**차량관리 담당**

※ 구분모집 : (장애인)

임용예정직급	주요업무	근무예정부서 및 인원		
운전 9급	○ 경찰관서 물자 및 경력 수송 업무 ○ 공용차량 운용 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각 시도경찰청 소속경찰서		
		광주청 1	울산청 3	경기남부청 3
		경기북부청 1	강원청 4(1)	충북청 4
		충남청 5	전남청 2	경북청 11
		경남청 1(1)		

※ 각 시도경찰청 통합선발 후 경찰서별 배치 예정, 배치현황은 다음페이지 참조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필요 지식	○ 도로교통법의 전반적인 이해 ○ 자동차 관리 및 안전운행에 대한 이해 ○ 에코드라이빙(친환경, 경제운전)에 대한 이해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관련분야 경력〕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사업자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승객 대상 승용·승합자동차를 운행한 경력, 근무경력(재직) 증명서에 담당업무, 운전차종 등 기재 시 인정** ※ 승용·승합자동차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한함(화물차 운전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우대요건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자동차정비·舊검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 **교통법규 준수 이력** - 공고일 이후(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제1종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등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이나,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불인정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 범죄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처리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공고문 9페이지 '가산요건 범위' 참조)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필수 서류 (공통)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총 6매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서명란에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서명란에 자필 서명 필수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만 제출(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발급)
개별 서류 (해당자)	**8. 관련 자격증 등 사본 1부** **(대회 입상자 포함)**	ㅇ 해당자에 한함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해당자만**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구 분		내 용
개별 서류 (해당자)	**10.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해당자만**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전공분야 표시 - 전공·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및 수료자는 불인정 ㅇ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추후 임용예정일(2027. 2. 15.)까지 학위취득증명서 별도 제출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서식 제8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1.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9호>: **해당자만**	ㅇ **연구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최근 5년 이내(2021.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주저자·교신저자·저서 포함, KCI 등재후보지·학위논문·용역실적은 제외
	12. 소송 수행실적 증빙서류 1부 **: 해당자만**	ㅇ '소송 수행실적'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련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캡쳐본, 판결문 등 해당 실적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 ㅇ 법원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를 포함한 소송수행내역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임의 양식)
	13.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 해당자만**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어학성적에 한함
	14. 운전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plus.gov.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 할 수 있음
	15.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ㅇ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1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ㅇ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것에 한함
	17. 가산특전 증명서 1부	ㅇ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특전 대상자 증명서류
	18. 장애인·저소득층 증명서 1부	ㅇ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자에 한함 ㅇ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수급(지원)기간 명시 필수
	19.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증명서류 1부	ㅇ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한함 ㅇ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서식>

응 시 원 서

충청북도경찰청장 귀하

본인은 충청북도경찰청 2026년 제2회 일반직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채용담당자가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채용담당자가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부본)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전자우편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충북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예) (21) 의료기술(정신·신체건강 증진·지원) 의료기술7급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응시구분	응시번호	응시요건
○ ○ ○	(21) 정신·신체건강 증진·지원 의료기술7급 ※ 직무기술서 연번 기재	※ 채용담당이 기재	①자격증 ②경력 ③학위

▣ 작성목록

목 록	제출 여부
1. 이력서 1부 (필수)	
2. 자기소개서 1부 (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필수)	
6.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성만 해당)	
7. 자격증 등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9.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10. 연구논문요약서 및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11. 소송 수행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12.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13. 운전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14.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1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16. 가산특전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증명서류 1부 (해당자만 제출)	
17.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따른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18.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19. 복수국적 해당여부 : ☑ **해당없음** ☐ **이중국적**	

※ 작성·제출한 항목은 제출여부 란에 "○" 표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기재 후 서류 미제출시에는 해당 목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합니다.
※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전화번호: E-Mail: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 채용담당기재	**응시구분**	(21) 정신·신체건강 증진·지원 의료기술7급 ※ 직무기술서 연번 기재	**성 명**	○ ○ ○
응시자격요건	학위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본인이 응시하는 **응시자격요건**을 1개만 선택하여 정확히 기재)			

나. 응시자격						비고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사	년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근무형태**	**담당업무**	
	00기업(00과)	년월일~년월일	대리	주 40시간	반드시기입	휴직기간 및 사유 표기
	00기업(00계)	년월일~년월일	팀장	주 30시간	반드시기입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학	년월일		법학 학사, 석사 등		

다. 우대요건							비고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사	년월일			○○기관		
근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근무형태**	**담당업무**	
	00기업(00팀)	년월일~년월일		대리	총 400일	반드시기입	휴직기간 및 사유 표기
	00기업(00팀)	년월일~년월일		과장	주 40시간	반드시기입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학	년월일			학사, 석사 등		
논문	**제목**	**집필자명**	**게재지명**	**발표(게재)일자**	**등재구분**	**논문기여도**	**학위논문여부**
	한글명(영문명)			년월일			O / X
대회입상	**대회명**	**대회내용**		**주최기관**	**입상일자**		
		간략히		○○부	년월일		
기타	**외국어능력시험**	시험명, 점수(등급)		시행기관, 시험년월일			
	운전면허	종류 기재		취득연원일 기재			법규위반 여부 O/X
	KOLAS 교육	교육 과정 기재		교육 기관 기재			합격일 기재

라. 가산요건							비고
한국사 검정시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시험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 10%	□ 5%	**의사상자 등**	□ 5%	□ 3%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구분:**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직무기술서 연번 기재)의 직급과 소속 기재

<예시 : (1) 송무담당(법무행정) 6급 (○○청)>

③ **응시자격요건:** 응시분야의 응시자격요건 중 본인이 선택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1개 요건을 기재

④ **응시자격:**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자격증, 경력 또는 학위 중 1개 선택)만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증명서에 기재된 전공과 동일하게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논문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O, X 중 선택하여 작성

표장(상훈)

- 표창(상훈)명: 국가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자격증 등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 및 대회입상 실적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모든 항목은 자격요건, 우대요건, 가산요건에 적합하고 검증 가능한 내용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씨크기, 장평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요약서 A4 2매 이내로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별지서식 제5호> ※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충청북도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충청북도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재직)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증명사항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주당 근무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

※ 각 기관별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며,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 증명서 사용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별지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요약서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SCI □ SSCI □ A&HCI □ SCIE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10호> ※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채용담당기재	접수일자	※ 채용담당기재

청구인	성 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2. 30.(수) ~ '27. 1. 29.(금)

<별지서식 제11호>　　※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반드시 기관 주소로 발송

[보내는 사람]

응시구분	(21) 정신·신체건강 증진·지원 의료기술 7급_충북청
성　　명	홍 길 동
휴 대 폰	000-0000-0000

□□□□□

'26년 경찰청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채 제출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제출서류는 '26. 10. 16.(금) ~ 10. 26.(월) 18:00까지 등기우편 접수(소인분에 한함)

등기 발송증 부착

[받는 사람]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충청북도경찰청
8층 교육계　　일반직 채용담당자 앞

☎ (043) 240 - 2132

2 8 3 0 9